

거창군 화재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1-14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화재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화재취약계층에게 지원하던 주택용 소방시설을 전 군민으로 확대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대한 거창군의 책임을 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현행) 거창군 화재취약계층 지원 조례

⇒(변경) 거창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나. 주택용 소방시설 등 재정지원 근거 마련(안 제4조)

1) 전 군민에게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지원

2) 화재취약계층 주택에 화재발생 시 주택 잔재물 처리비용 지원

다.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대상 확대(안 제5조)

1) 지원대상: (현행)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화재취약계층

⇒ (변경) 거창군에 주소를 둔 주민

2) 우선지원 대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5세 이상 홀로사는노인 등

라. 주택화재 예방을 위한 비용 지원범위를 정함(안 제6조)

1) 주택용 소방시설

2) 그 밖에 군수가 화재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마. 지원신청, 지원결정을 정함(안 제7조·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9조·제22조, 「지방재정법」 제17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나. 예산조치: 2021년도 예산 20백만원 확보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1. 1. 29.~2. 18.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화재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화재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주택의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군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등 지원) ① 군수는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5조 각 호의 주택에 화재발생 시 주택 잔재물 처리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지원 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은 거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이 거주 중인 주택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제6조(지원 범위)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용 소방시설
2. 그 밖에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노후시설 교체 등 군수가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 신청) ① 제4조제1항·제2항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 등 지원 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친족이나 이장이 대신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이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 결정) ① 읍·면장은 지원 신청서를 받아 지원 대상의 적정여부 등을 판단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② 군수는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용 소방시설 등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는 개정 규정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별지 서식]

주택용 소방시설 등 지원 신청서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 폰)	

설치장소

- 주택유형 단독주택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등)
 그 밖에 군수가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 지원범위
- 소화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 개
 - 그 밖에 군수가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방시설 ()
 - 주택화재 시 주택 잔재물 처리비용
우선지원대상만 지원 가능합니다.

우선지원대상 구분	<input type="checkbox"/> 독거노인 거주 주택	<input type="checkbox"/>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거주 주택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거주 주택	<input type="checkbox"/> 차상위계층 거주 주택
	<input type="checkbox"/> 소년소녀가정 세대 거주 주택	<input type="checkbox"/> 다문화가족 거주 주택
	<input type="checkbox"/> 한부모가족 거주 주택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세대()

「거창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 등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대상자와의 관계:)

거 창 군 수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거창군 화재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등 지원) ① 군수는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5조 각 호의 주택에 화재발생 시 주택 잔재물 처리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지원 예산은 20백만원으로 연 5천만원 이하에 해당

4. 작 성 자

안전총괄과장 이 병 주